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44

발의연월일: 2025. 3. 28.

발 의 자: 윤종군 • 부승찬 • 이춘석

박홍근 • 이연희 • 진선미

홍기원 · 남인순 · 안태준

김태선 · 김태년 · 문진석

소병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사기 피해 및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여부 확인 및 동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판매자에 대한 인증절 차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 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58 조제4항 및 제69조의5에서 같다"로 한다.

제5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판매·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동차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58조제4항 중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를 "자동차매매업자"로 한다.

제69조의4제2항 전단 중 "이 조에서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6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판매・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자를 제외한다)가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 ·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0조제7호의2 중 "허위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69조의5를 위반하여 자동차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10.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광고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② (생 략)	금지 행위)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③
및 종사원을 <u>포함한다</u>)는 다음	<u>포함한다.</u>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이하 제58조제4항 및 제69조의
된다.	<u>5에서 같다)</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판매・
	<u>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u>
	<u>하려면 자동차소유자의 사전</u>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u>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u>	④ <u>자동차매매업자</u>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	
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한다.

- ⑤ ~ ⑩ (생 략)
-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 저 광고의 모니터링) ① (생 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 ⑥ (생 략) <신 설>

⑤ ~ ⑩ (현행과 같음) 세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 ① (현행과
같음)
②
<u>같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세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
를 판매·알선하기 위한 표시
·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7의2.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허위로 제공한 자

8. ~ 10.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신 설>

매업자를 제외한다)가 제57조
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
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
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
재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u>한다.</u>
제80조(벌칙)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8. ~ 10.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6. (현행과 같음)
7. 제69조의5를 위반하여 자동

- ③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⑥ (생략)

차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 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 니한 자

- ③ ④ (현행과 같음)
- (5) ------
- 1. ~ 9. (현행과 같음)
- 10.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자동차의 표시·광고를 한 자
- ⑥ (현행과 같음)